

2019회계연도 안동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 결산검사 의견서

안동시 결산검사위원회

2019회계연도 안동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

수 신 : 안 동 시 장

2019회계연도 안동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년 4월 2일 ~ 4월 21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배 은 주 (안동시의회 의원)
- 위 원 : 윤 이 식 (세무사)
- 위 원 : 변 창 호 (세무사)
- 위 원 : 김 선 응 (세무사)

2019회계연도 안동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

안동시장 귀하

2020년 5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안동시 의회로부터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4월 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안동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안동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안동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배 은 주
위 원	윤 이 식
위 원	변 창 호
위 원	김 선 응





# 목 차



I. 결산검사 경과 .....	4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5
1. 안동시 재정의 개황 .....	5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7
(1) 총괄 .....	7
(2) 일반회계 .....	8
(3) 특별회계 .....	12
(4) 다음연도 이월비 .....	16
3. 기금의 결산 .....	17
4. 재무제표의 결산 .....	18
5. 성과보고서 .....	20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1
III.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	24
1.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이월 최소화 권고 .....	24
2.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침 지방회계법과 배치 .....	25
3. 공무원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방안 검토 .....	26
4. 천연색소 원료생산 계약재배 생산물 보상사업에 대한 검토 .....	27
5. 민간행사보조사업(우리소리 축제)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 .....	27
6. 안동문화 관광단지 운영에 대한 제안 .....	28
7. 「엘앤에스 농식품 6차 산업화 투자조합」 투자손실 최소화 .....	29
8.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철저 .....	29
IV.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조치내용 .....	30

**I****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0. 4. 2. ~ 4. 21.(20일간)
2. 검사장소 : 안동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3.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비 고
대표위원	배 은 주	안동시의회 의원
위 원	윤 이 식	세무사
위 원	변 창 호	세무사
위 원	김 선 응	세무사

## 4. 결산검사사항

- 세입결산액에 관한 사항 : 예산대비 수입실적
- 세출결산액에 관한 사항 : 지출 및 불용액,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 기금결산 사항 : 기금 운용의 적정성
- 채권 및 채무에 관한사항 : 채권 및 채무의 적정성
- 국·도비 보조금 사용내역
-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사항 : 재산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5.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안동시 재정의 개황

####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세 입	935,664,322,665	990,991,950,372	1,123,183,585,623	1,238,855,515,576	1,434,443,109,421
	세 출	765,054,107,107	785,826,714,099	857,028,567,705	953,319,345,244	1,191,200,693,318
	결산상잉여금	170,610,215,558	205,165,236,273	266,155,017,918	285,536,170,332	243,242,416,103
특별회계	세 입	180,612,788,720	143,566,429,715	166,733,531,743	167,840,176,803	164,932,959,069
	세 출	120,912,678,234	99,515,431,770	116,743,127,472	109,765,233,475	99,933,365,733
	결산상잉여금	59,700,110,486	44,050,997,945	49,990,404,271	58,074,943,328	64,999,593,336
기 금	수 입	11,219,173,724	10,855,937,805	21,125,672,544	27,001,493,094	92,146,764,958
	지 출	2,122,958,750	1,247,326,182	3,066,591,000	4,505,719,440	2,015,290,130
	결산상잉여금	9,096,214,974	9,608,611,623	18,059,081,544	22,495,773,654	90,131,474,828
총 계	세 입(A) (수 입)	1,127,496,285,109	1,145,414,317,892	1,311,042,789,910	1,433,697,185,473	1,691,522,833,448
	세 출(B) (지 출)	888,089,744,091	886,589,472,051	976,838,286,177	1,067,590,298,159	1,293,149,349,181
	결산상잉여금 ( A-B=C )	239,406,541,018	258,824,845,841	334,204,503,733	366,106,887,314	398,373,484,267

- 2019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총세입이 1,691,522,833,448원, 총세출은 1,293,149,349,181원 이며, 결산상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398,373,484,267원입니다.
- 최근 5년간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수입이 매년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을 주민수(160,052명)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 는 현년도에 7,442,585원으로 전년대비 1,564,429원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상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년	5,179,526,979,278	54,725,348,765	5,124,801,630,513	1,192,021,699,798	944,980,858,185	-247,040,841,613	
2018년	4,919,773,548,659	56,034,992,960	4,863,738,555,699	1,021,978,930,575	839,198,537,170	-182,780,393,405	
증 감	259,753,430,619	-1,309,644,195	261,063,074,814	170,042,769,223	105,782,321,015	-64,260,448,208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투입된 원가 보다 수익이 초과함을 표시 ( '-' : 자원의 절약, '+' : 자원의 선(先) 사용)

- 2019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61,063,074,814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37%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총비용-총수익)은 전년대비 64,260,448,208원 (35.1%)이 감소하였습니다.

○ 안동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채무계 a=(b+c+d)	10,000,000,000	19,000,000,000	0	0	0	
공채 (b)						
차입금 (c)	10,000,000,000	19,000,000,000	0	0	0	
채무부담행위 (d)						
지방공기업 채무 (e)						
채무총합계 f=(a+e)	10,000,000,000	19,000,000,000	0	0	0	

- 안동시 채무는 2015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감소추세였으며, 2016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안동터미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위한 지방채 9,000,000,000원을 발행한 이후, 2017년에 2009년 지역개발기금 채원보전분 10,000,000,000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방채 9,000,000,000원을 모두 상환하여 현재 채무는 0원입니다.

##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1) 총괄

○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잉여금(C=A-B)
합계	1,585,450,687,423	1,599,376,068,490	1,291,134,059,021	308,242,009,469
일반회계	1,420,299,084,443	1,434,443,109,421	1,191,200,693,318	243,242,416,103
특별회계	165,151,602,980	164,932,959,069	99,933,365,703	64,999,593,366
공기업특별회계	122,039,349,870	120,557,156,696	75,043,551,553	45,513,605,143
기타 특별회계	43,112,253,110	44,375,802,373	24,889,814,150	19,485,988,223

#### 【결산상 잉여금 내역】

(단위 : 원)

구분	현년도 채무상환	다음연도 이월액(D)				순세계잉여금 (E=C-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실제반납금	
합계		138,081,721,626 (155,000,000)	25,286,539,342	0	6,961,384,506	137,912,363,995
일반회계		120,761,721,426 (155,000,000)	23,720,798,102	0	6,899,688,669	91,860,207,906
특별회계		17,320,000,200	1,565,741,240	0	61,695,837	46,052,156,089
공기업특별회계		15,652,663,200	1,220,961,370	0	0	28,639,980,573
기타 특별회계		1,667,337,000	344,779,870	0	61,695,837	17,412,175,516

※ ( )는 자금 없는 이월금으로 명시이월 금액에 미포함.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99,376,068,490원으로 예산현액 1,585,450,687,423원보다 13,925,381,067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1%인 1,291,134,059,021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308,242,009,469원입니다.
- 이중 명시이월비 138,081,721,626원, 사고이월비 25,286,539,342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961,384,506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7,912,363,995원입니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308,242,009,469원임이 확인됩니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1,420,299,084,443	1,452,232,701,678	1,434,443,109,421	1,489,182,390	16,300,409,867
결산확인액	1,420,299,084,443	1,452,232,701,678	1,434,443,109,421	1,489,182,390	16,300,409,867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434,443,109,421원은 예산현액의 101%로서 14,144,024,978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3,584,675,250원 및 세외수입 11,149,118,789원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되었으며,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도 결산액과 일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434,443,109,421	1,434,443,109,421	0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2019년	1,420,299,084,443	1,452,232,701,678	1,434,443,109,421	1,489,182,390	102.25	98.78	0.10
2018년	1,223,116,594,500	1,254,960,882,871	1,238,855,515,576	1,409,400,313	102.60	98.72	0.11
증 감	197,182,489,943	197,271,818,807	195,587,593,845	79,782,077	-0.36	0.06	-0.01

- 수납액은 전년도 1,238,855,515,576원보다 195,587,593,845원이 많은 1,434,443,109,42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409,400,313원보다 79,782,077원이 증가한 1,489,182,390원입니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배분금액부족 11,691,010원, 시효소멸 369,774,980원, 행방불명 94,389,580원, 무재산 939,616,970원, 평가액 부족 73,709,8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1,420,299,084,443	1,452,232,701,678	1,434,443,109,421	1,489,182,390	16,300,409,867	
지 방 세	78,739,107,000	92,655,878,430	82,323,782,250	745,158,300	9,586,937,880	
세 외 수 입	소 계	34,409,649,000	53,016,263,866	45,558,767,789	744,024,090	6,713,471,987
	경상적세외수입	19,167,310,000	21,277,726,370	21,208,205,796		69,520,574
	임시적세외수입	15,242,339,000	31,738,537,496	24,350,561,993	744,024,090	6,643,951,413
지 방 교 부 세	604,846,248,000	605,639,891,100	605,639,891,100			
조정교부금 등	27,453,042,000	27,453,042,000	27,453,042,000			
보 조 금	388,659,369,000	387,275,955,950	387,275,955,95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6,191,669,443	286,191,670,332	286,191,670,332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내역 중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5.74%인 82,323,782,25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5,558,767,78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42.2%인 605,639,891,100원, 조정교부금 등은 27,453,042,000원, 보조금은 387,275,955,9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결 산 액	1,243,100,000,000	1,420,299,084,443	1,191,200,693,318	144,637,519,528	84,460,871,597
결산확인액	1,243,100,000,000	1,420,299,084,443	1,191,200,693,318	144,637,519,528	84,460,871,597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현액 1,420,299,084,443원은 전년도 이월액 177,199,084,443원과 예산액 1,243,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87%에 해당하는 1,191,200,693,318원이었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637,519,528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주요시책개발사업 등 269개 사업으로 120,916,721,426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3,720,798,102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야의 중 타중행사 등 96개 사업입니다.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5%에 해당되는 84,460,871,597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과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후 발생한 잔액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191,200,693,318	1,191,200,693,318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8 지출액	2019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953,319,345,244	1,420,299,084,443	1,191,200,693,318	83.9%	237,881,348,074	25.0%
일반공공행정	54,698,240,779	115,177,152,430	111,537,759,465	96.8%	56,839,518,686	103.9%
공공질서및안전	5,565,935,420	9,740,740,235	8,936,895,220	91.7%	3,370,959,800	60.6%
교 육	5,950,450,110	6,787,650,000	6,697,295,624	98.7%	746,845,514	12.6%
문 화 및 관 광	127,793,058,958	214,141,693,630	173,751,204,956	81.1%	45,958,145,998	36.0%
환 경 보 호	43,108,110,275	65,410,844,710	60,712,394,961	92.8%	17,604,284,686	40.8%
사 회 복 지	235,296,979,999	303,376,858,560	286,985,447,483	94.6%	51,688,467,484	22.0%
보 건	15,115,956,350	20,130,812,100	19,230,904,753	95.5%	4,114,948,403	27.2%
농림해양수산	143,874,106,464	189,473,870,341	158,246,868,179	83.5%	14,372,761,715	10.0%
산업·중소기업	34,792,287,748	37,974,190,500	31,659,628,873	83.4%	-3,132,658,875	-9.0%
수송 및 교통	68,053,118,433	111,003,273,185	93,011,745,540	83.8%	24,958,627,107	36.7%
국토및지역개발	105,177,681,515	176,825,184,752	122,155,453,963	69.1%	16,977,772,448	16.1%
예 비 비	0	48,417,740,000		0.0%	0	0.0%
기 타	113,893,419,193	121,839,074,000	118,275,094,301	97.1%	4,381,675,108	3.8%

-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기능별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86,985,447,483원 , 문화 및 관광 173,751,204,956원, 농림해양수산 158,246,868,179원 입니다.
-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부문은 일반공공행정분야로 56,839,518,686원이 증가 되었으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도 일반공공행정분야로 전년대비 103.9% 증가하였습니다.

### (3) 특별회계

#### 가. 세입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65,151,602,980	171,601,995,693	164,932,959,069	702,856,076	5,966,180,548
공기업특별회계	122,039,349,870	121,256,200,396	120,557,156,696		699,043,7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656,225,430	59,950,500,803	59,525,975,563		424,525,2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383,124,440	61,305,699,593	61,031,181,133		274,518,460
기타특별회계	43,112,253,110	50,345,795,297	44,375,802,373	702,856,076	5,267,136,848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771,279,500	10,784,828,183	10,784,828,18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30,082,000	5,027,419,820	3,928,757,874	653,453,176	445,208,77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861,572,000	1,345,056,008	855,062,596		489,993,412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649,278,000	5,821,006,147	5,656,159,949		164,846,198
주택사업특별회계	4,612,912,000	4,937,164,678	4,876,251,119		60,913,559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11,334,000	604,190,045	604,190,045		
치수사업특별회계	4,341,494,000	4,378,212,844	4,377,895,274		317,57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327,688,610	12,061,782,818	7,923,670,229	49,402,900	4,088,709,689
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 사업특별회계	1,877,660,000	2,257,257,759	2,240,110,109		17,147,6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80,041,000	180,768,165	180,768,165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938,348,000	2,937,470,180	2,937,470,18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564,000	10,638,650	10,638,650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결산확인액	165,151,602,980	171,601,995,693	164,932,959,069	702,856,076	5,966,180,548
차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64,932,959,069원은 예산현액의 99.87%로서 그 차액은 218,643,911원이며,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11%로서 전년도 95.87%에 비하여 0.24%가 높아졌습니다.
- 불납결손액은 702,856,076원으로서 이는 주로 시효소멸에 기인하였으며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48%인 5,966,180,548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세태만, 무재산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64,932,959,069	164,932,959,069	0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65,151,602,980	99,933,365,703	18,885,741,440	46,332,495,837
공기업특별회계	122,039,349,870	75,043,551,553	16,873,624,570	30,122,173,74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656,225,430	38,335,912,840	12,465,124,070	9,855,188,52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383,124,440	36,707,638,713	4,408,500,500	20,266,985,227
기타특별회계	43,112,253,110	24,889,814,150	2,012,116,870	16,210,322,09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771,279,500	9,353,132,010	727,739,000	690,408,4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30,082,000	3,813,374,740		116,707,26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861,572,000	147,774,750		713,797,250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649,278,000	3,280,000		5,645,998,000
주택사업특별회계	4,612,912,000	30,800,000		4,582,112,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11,334,000	319,869,440		291,464,560
치수사업특별회계	4,341,494,000	967,022,820	305,229,500	3,069,241,68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327,688,610	6,182,996,140	859,313,370	285,379,100
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특별회계	1,877,660,000	1,093,436,820	19,000,000	765,223,1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80,041,000	171,222,650	8,200,000	618,350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938,348,000	2,806,904,780	92,635,000	38,808,22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564,000			10,564,000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0
결산확인액	165,151,602,980	99,933,365,703	18,885,741,440	46,332,495,837
차액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47,600,000,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7,551,602,98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65,151,602,980원이었습니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51%에 해당하는 99,933,365,703원이었으며,
-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7,320,000,200원이고 사고이월은 1,565,741,24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소유자 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05%에 해당하는 46,332,495,837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예비비 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99,933,365,703	99,933,365,703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 (4)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 2019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단위 : 원)

구 분	계속비이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비고
합 계		138,236,721,626	25,286,539,342	
일반회계		120,916,721,426	23,720,798,102	
특별회계		17,320,000,200	1,565,741,240	
공기업특별회계		15,652,663,200	1,220,961,37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421,736,830	1,043,387,24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230,926,370	177,574,130	
기타특별회계		1,667,337,000	344,779,87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27,739,000		
치수사업특별회계			3052295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38,763,000	20,550,370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특별회계			19,000,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200,000		

※ 명시이월비는 자금없는 이월금액(155,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

- 검사결과 명시이월비는 138,236,721,626원, 사고이월비는 25,286,539,342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명시이월 중 자금 없는 이월금은 155,000,000원으로 [균]기초생활인프라(생활환경정비) 사업이었으며 국고보조금의 미수령에 기인한 것입니다.

### 3. 기금의 결산

○ 2019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22,495,773,654	67,685,701,174	69,650,991,304	2,015,290,130	90,131,474,828
재난관리기금	3,944,432,771	△404,117,431	1,015,890,719	1,420,008,150	3,540,315,340
노인복지기금	1,058,135,918	5,049,154	20,049,154	15,000,000	1,063,185,072
자활기금	893,089,832	24,945,600	54,862,580	29,916,980	918,035,432
양성평등기금	307,295,843	△3,853,372	6,146,628	10,000,000	303,442,471
식품진흥기금	404,581,856	△19,717,259	24,502,741	44,220,000	384,864,597
체육진흥기금	3,362,804,592	66,779,369	66,779,369		3,429,583,961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277,859,307	209,318,935	525,463,935	316,145,000	487,178,242
옥외광고발전기금	185,783,733	229,537,608	229,537,608		415,321,341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60,997,790	1,570,451,790	1,700,451,790	180,000,000	1,581,449,580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	12,000,792,012	6,000,649,246	6,000,649,246		18,001,441,258
재정안정화기금		60,006,657,534	60,006,657,534		60,006,657,534

- 검사결과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의 2019 회계연도말 현재액은 90,131,474,828원으로 전년대비 67,635,701,174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재정안정화기금이 2019회계연도에 신규로 운용됨에 따른 것으로, 본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2,015,290,131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 4. 재무제표의 결산

○ 2019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919,773,548,659	5,179,526,979,278	259,753,430,619	5.28
Ⅰ. 유 동 자 산	383,993,433,739	417,889,799,024	33,896,365,285	8.83
Ⅱ. 투 자 자 산	16,968,362,336	16,138,929,577	-829,432,759	-4.89
Ⅲ. 일 반 유 형 자 산	183,655,147,111	193,299,568,742	9,644,421,631	5.25
Ⅳ. 주 민 편 의 시 설	822,068,396,381	904,677,904,892	82,609,508,511	10.05
Ⅴ. 사 회 기 반 시 설	3,504,456,135,041	3,638,421,166,285	133,965,031,244	3.82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8,632,074,051	9,099,610,758	467,536,707	5.42
부 채	56,034,992,960	54,725,348,765	-1,309,644,195	-2.34
Ⅰ. 유 동 부 채	10,739,866,689	12,521,107,585	1,781,240,896	16.59
Ⅱ. 장 기 차 입 부 채	0	0	0	0
Ⅲ. 기 타 비 유 동 부 채	45,295,126,271	42,204,241,180	-3,090,885,091	-6.82
순 자 산	4,863,738,555,699	5,124,801,630,513	261,063,074,814	5.37
Ⅰ. 고 정 순 자 산	4,479,259,697,246	4,708,692,178,207	229,432,480,961	5.12
Ⅱ. 특 정 순 자 산	22,767,107,887	90,699,835,929	67,932,728,042	298.38
Ⅲ. 일 반 순 자 산	361,711,750,566	325,409,616,377	-36,302,134,189	-10.04

- 2019회계연도 말 안동시의 자산은 5,179,526,979,278원으로 전년도의 4,919,773,548,659원 보다 259,753,430,619원(5.28%)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반면, 2019회계연도 말 안동시의 부채는 54,725,348,765원으로 전년도의 56,034,992,960원 보다 1,309,644,195원(2.34%)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기미지급금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 업 순 원 가 ( 가 - 나 )	362,230,799,771	366,910,561,259	4,679,761,488	1.29
가.	사 업 총 원 가	640,177,056,621	777,872,985,714	137,695,929,093	21.51
나.	사 업 수 익	277,946,256,850	410,962,424,455	133,016,167,605	47.86
II.	관 리 운 영 비	123,135,795,526	123,203,587,202	67,791,676	0.06
III.	비 배 분 비 용	75,885,685,023	43,904,285,269	-31,981,399,754	-42.14
IV.	비 배 분 수 익	73,673,733,315	40,367,634,725	-33,306,098,590	-45.21
V.	재 정 운 영 순 원 가 ( I + II + III - IV )	487,578,547,005	493,650,799,005	6,072,252,000	1.25
VI.	일 반 수 익	670,358,940,410	740,691,640,618	70,332,700,208	10.49
VII.	재 정 운 영 결 과 ( V - VI )	-182,780,393,405	-247,040,841,613	-64,260,448,208	35.16

- 안동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777,872,985,714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10,962,424,455원을 차감한 366,910,561,259원이며, 일반회계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지역도로망 확충’ (39,987,114,626원) 과 ‘노인복지증진도모’ (23,982,385,571원)이었습니다.
- 또한, 2019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22,509,967,994원과 기타관리운영비 693,619,208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1,169,668,879원, 기타비용 42,734,616,390원(자산처분손실 91,810,000원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8,809,203,366원, 기타수익 11,558,431,359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2019회계연도 안동시의 재정운영결과는 -247,040,841,613원으로 전년도의 -182,780,393,405원보다 64,260,448,208원(35.16%) 감소하였습니다.

## 5. 성과보고서

- 안동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안동시는 본 회계연도의 ‘품격높은 도시·풍요로운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3)-정책사업목표(95개)-단위사업(23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13	95	230	200	30	87.0
기획예산실	1	2	6	5	1	83.3
종합민원실	1	1	2	0	2	0.0
공보감사실	1	2	5	4	1	80.0
행정지원실	1	1	3	2	1	66.7
문화관광국	1	13	31	28	3	90.3
경제산업국	1	19	33	30	3	90.9
복지환경국	1	19	48	41	7	85.4
도시건설국	1	18	44	41	3	93.2
신도청전략사업단	1	5	13	10	3	76.9
보건소	1	4	14	12	2	85.7
농업기술센터	1	3	14	11	3	78.6
의회사무국	1	1	1	1	0	100.0
평생학습원	1	7	16	15	1	93.8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 안동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은 100%를 달성한 반면, 행정지원실 66.7%, 신도청전략사업단 76.9%, 농업기술센터 78.6%, 종합민원실은 0%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채권

#### 【채 권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0,297,679,843	379,021,520	1,924,003,786	8,752,697,577
일반회계	6,875,957,800	0	722,100,000	6,153,857,800
특별회계	3,421,722,043	379,021,520	1,201,903,786	2,598,839,77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12,009,026	62,050,130	680,277,726	493,781,43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769,578,883	165,676,000	202,423,470	732,831,413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8,468,764	10,000,000	10,000,000	178,468,764
주택사업특별회계	1,361,665,370	141,295,390	309,202,590	1,193,758,170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52,697,577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특별회계 융자금채권 증가에 기인하며, 감소 요인은 공무원 학자대여금의 감소와 기타 특별회계 융자금채권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2) 채무

【채무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	“해	당 없	음 “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3) 공유재산

○ 2019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2,390,229,308,757	299,059,914,588	22,743,023,597	2,666,546,199,748	
행정 재산	소계	2,325,778,251,823	298,782,933,537	22,019,629,558	2,602,541,555,802
	공용재산	383,236,051,900	37,186,467,405	3,442,233,426	416,980,285,879
	공공용재산	1,928,172,569,963	261,502,255,932	18,473,181,532	2,171,201,644,363
	기업용재산	9,774,385,991			9,774,385,991
	보존재산	4,595,243,969	94,210,200	104,214,600	4,585,239,569
일반재산	64,451,056,934	276,981,051	723,394,039	64,004,643,946	

-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76,316,890,991원이 증가한 2,666,546,199,748원입니다.
- 주요 증가 내역은 옥동대로 확장공사, 안기대로 개설공사, 임하호수상 레저타운조성, 녹전면 사신리 인공습지 조성,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안동 인라인경기장 조성 등 행정재산 신축에 기인한 것입니다.

#### (4) 물품

○ 2019 회계연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1,615	163	14	1,764
금 액	12,371,601,110	2,058,059,000	244,863,000	14,184,797,110

-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대비 1,813,196,000원이 증가한 14,184,797,11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구매 및 노후 공용차량(승용자동차, 대형버스, 쓰레기수거용트럭, 화물트럭 등) 교체에 기인한 것입니다.



### Ⅲ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 ①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이월 최소화 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12.3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불용률(불용총액/일반회계 최종예산액)과 이월률(이월총액/일반회계 최종예산액)이 동종지방자치단체 평균 보다 높은 경우 2019년 결산분부터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당해 연도에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액과 이월을 최소화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내지 3항에서는 이월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집행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이월예산은 146,745백만 원 (명시이월 122,584백만 원, 사고이월 24,161백만 원)으로 지난해 179,995백만 원 (명시이월 131,909백만 원, 사고이월 48,086백만 원)보다 18%가 줄어 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이월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전년보다 18% 가까이 이월액이 줄어드는 등 당해 연도 내 예산을 집행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는 점은 안동시 재정운영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그러나 안동시 일반회계의 45~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필요함

## ②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침 지방회계법과 배치(背馳)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최대 5년간 최저 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참여기업을 공모 및 심사·선정해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도의 경우 15개 기업 109명을 대상으로 9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비율증가 등으로 도내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경북도에서는 7월분까지 사업비를 제외하고 잔여예산 115,005천원(국비 104,550, 도비 10,455)은 반납 받아 타 시군에 배정함.
-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잔여사업비 419,379천 원은 2018.07.24.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당월분 또는 수개월분의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신청 가능)에 따라 익년도인 2019년01월23일 소급해서 지급함.(경북도에서 고용노동부 지침변경에 따라 소급적용 시달)
- 그러나, 지방회계법 제37조는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공무원의 보수나, 연금부담금, 반환금, 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원인행위 부존재로 채무가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급해서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시달 함

- 더구나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법규와도 배치되는 지침이라 할 수 있음. 만일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외 타 법률이 적용돼 소급지출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변경된 지침의 상위 법률적 규정을 적시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③ 공무원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방안 검토

#### [현황]

- 우리시는 퇴직금제도 운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으나, 국비공무직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국비예산이 편성되어 지출 후, 충당금 보관방법의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안동시 국비공무직 부서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현황】

구분 \ 부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보건소 (일반회계)
적립방법	전용계좌 적립	전용계좌 적립	세입세출외현금

#### 【도내 타 시·군 적립현황】

2020. 4. 17.현재

구분 \ 방법	계	전용계좌 적립	세입세출외현금	세외수입
시·군	22	17	4	1
		포항,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청송, 영덕, 청도,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주, 의성, 고령, 성주	영양

#### [문제점]

- 관련 부처에서 공공부문 공무원에 대한 제도(임금, 근로조건 등)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기관별 단체교섭을 통해 정하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력 소모가 막대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 3월 공공부문 공무원 정책 등을 논의할 범정부 ‘공무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도가 마련되어 시달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이렇듯 퇴직급여충당 방법에 관한 지침 또한 없어,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자체 판단하여 적립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 일괄 회계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천연색소 원료생산 계약재배 생산물 보상사업에 대한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안동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 농업기술센터는 천연색소 원료생산 계약재배 농산물 실비보상사업비 196,500,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재단법인 한국 천연색소 산업화 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실제 농산물 계약재배 실비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5 민간행사보조사업(우리소리 축제)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소리를 중심으로 전통 국악 축제를 표방하는 우리소리 축제 보조금 정산 결과를 검토한 바 당초 축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B-Boy 공연, 패션쇼 등)과 다소 과도한 인건비 등이 집행된 부분이 확인 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이에따라, 민간행사보조사업 시행 시 축제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

## 6 안동문화 관광단지 운영에 대한 제안

### [현황]

- 안동문화 관광단지 관리운영 위탁협약에 따라 경북관광공사가 수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화 관광단지에 대한 운영 보조금은 당초 안동시가 예측한 운영비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협약서에 명시된 불합리적인 위탁비용 규정에 따라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임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280,609,000	1,360,830,000	1,200,000,000
교부결정액	1,100,000,000	1,100,000,000	1,200,000,000
운영비부족분 지급액	180,609,000	260,830,000	

### [문제점]

- 문화관광 단지 내 유교랜드, 온프레피움 등이 현재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한계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북관광공사의 적극성 부재로 인해 매년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개장한 유교랜드의 내부 설비 등의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거액의 교체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제안하였으나 조치가 없어 관광단지 활성화가 요원한 실정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이에 따라, 기 제안된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조속한 시행으로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소모적인 운영비는 줄이고 관광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7 「엘앤에스 농식품 6차 산업화 투자조합」 투자손실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2014년부터 엘앤에스 농식품 6차 산업화 투자조합에 20억 원(20%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나 조합에서 선정한 농식품경영체 대부분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9년도 말 현재 730백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2020. 4월 현재 기업들의 재정 상태로 보아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투자가 종료되는 2021. 1월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요구가 필요함

## 8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철저

### [현황]

- 우리시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물류비로 매년 현금을 지원해 왔으며 2019년에 39개 업체가 총 2억원을 지원 받았음
- 최근 몇 년 동안의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유례없는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내 시군에서 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우리시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 본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다만, 유가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중복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물류비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IV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조치내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b>① 체납과태료 채권확보조치 방안 강구</b></p> <p><b>[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최근 5년간 징수율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미징수된 금액에 대한 징수율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li> <li>○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중 일부 체납분(25%)은 채권확보 조치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li> </ul> <p><b>[개선 및 권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적기에 체납과태료의 채권확보조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책임보험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건설기계(타이어식), 이륜차 등으로 부과가 되며 체납시 압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있음.</li> <li>○ 일부 체납분이 채권확보 조치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나 이륜차의 경우에는 물건이 아니라서 압류자체를 할 수 없고 또한 대체압류를 할 물건이 없을시 에도 압류를 실시하지 못함.</li> <li>○ 향후 고액 체납자(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정과 세외수입팀과 협조하여 변호관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부동산등 모든 압류가능 자산이 있을시 세정과 세외수입팀에 의뢰 협조요청하여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음.</li> </ul>	<p>교통행정과</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b>②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b></p> <p><b>[현 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내지 3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제도를 규정하고 있음.</li> <li>○ 다만,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집행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li> </ul> <p><b>[문 제 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총 이월예산은 194,095,187,423원 (명사이월 143,988,897,926원, 사고이월 50,106,289,497원)에 이르러 이월이 다소 과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대부분 사전 행정절차나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월을 최소화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음.</li> <li>○그러나, 예산 1조원 시대 도래와 함께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2018년도 1~3회 추경에서 1,68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절대적인 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측면이 있음.</li> <li>○더불어 국·도비 교부결정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 예상치 못한 민원발생 뿐 아니라 실시 설계용역 미시행 등 선행절차 미흡으로 인한 이월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li> <li>○향후 예산요구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완료 여부(타당성 용역, 실시설계 용역, 보상협의 등)를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겠음.</li> </ul>	<p>기획예산실</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개선 및 권고사항]</p> <p>○ 따라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이월은 불가피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 철저한 사전검토와 함께 타당성 용역, 실시설계 용역, 민원해소 등 선행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예산을 편성해 예산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이 필요함</p>	<p>○ 아울러, 예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만큼 신속집행 등과 연계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b>③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b></p> <p><b>[현황 및 문제점]</b></p> <p>○ 문화재 보수사업은 보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사유로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계속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예산이 과다함.</p> <p><b>[개선 및 권고사항]</b></p> <p>○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 뿐만 아니라 시비도 포함되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여건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p> <p>○ 또한,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시스템으로 파악이 가능토록 하여, 다음연도 결산 시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p> <p>[문화유산과 -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p>	<p>○ 문화재 보수는 특성상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가 크고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산의 연내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임.</p> <p>○ 2019년 사업 분 부터 규모가 큰 사업은 설계/시공 예산을 분리 신청하여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예산신청 시 여러 상황을 예측하고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음.</p> <p>○ 그리고 2020년 예산편성 시, 가능한 범위에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결산에 정확성을 기하겠음.</p>	<p>문화유산과</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b>④ 민간보조사업 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분 확인</b></p> <p><b>[현황 및 문제점]</b></p> <p>○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보조금 정산서류가 미흡하거나 보조금 정산 및 반환기한을 경과하여 정산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보조금 정산 및 반환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산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p><b>[개선 및 권고사항]</b></p> <p>○ 노인장애인복지과 - 「2018년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320,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한 바, 시설비 290,909,091원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29,090,909원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시설비 등 보조금의 경우 철저한 정산 검증이 필요함</p>	<p>○ 2018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회복지법인 안동애명(청옥보호작업장)외 2건 38,253,150원을 2019.8.26.일까지 반납 조치하였음.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보조금 정산검사를 더욱 면밀히 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음.</p>	<p>노인장애인 복지과</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개선 및 권고사항]</p> <p>○ <b>농업기술센터 - 「경북대표음식 발굴 육성 사업」</b></p> <p>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보조금의 성격이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조금 지급 시 주의시켜야 함.</p>	<p>○ 보조금의 성격이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음. 2018년 보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금으로 잡고 경비처리를 하도록 하고, 손익계산서를 확인하여 보조금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함. .</p> <p>다음부터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하겠음.</p>	<p>농업기술센터</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b>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처 개발방안 검토</b></p> <p><b>[현 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택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음</li> <li>○ 2018년말 현재 4,034백만원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매년 7~8억원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세를 감안하면 향후 몇 년 이내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축적될 것으로 추계됨</li> </ul> <p><b>[문 제 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세입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용자금 상환금과 이자,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촌주택과 국민주택 지원사업으로 농촌주택 지원사업은 2015년이후 지역농협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국민주택 지원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를 지출할 사업이 없어 사무관리비만 연간 약 2~3천만원정도 지출되는 상황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조례상 지원 대상이 주택개량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2013년부터 시비 부담이 없어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현재는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세출이 없는 실정임. 향후 조례 개정과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통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고 사업효과가 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음.</li> </ul>	<p>건축과</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 안동시의 주택보급율(2017년 기준 112%)과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변화, 사업이관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근거한 주택사업은 어려운 실정임</p> <p><b>[개선 및 권고사항]</b></p> <p>○ 이에 따라, 안동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불필요한 자금보유를 배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b>⑥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객관성 제고</b></p> <p><b>[현 황]</b></p> <p>○ 지방재정법 개정(2014년 5월)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어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6조제4항에 의하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함.</p> <p><b>[문제점 및 지적사항]</b></p> <p>○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보고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정한 측정지표가 미비하고, 일부 지표의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입력으로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p> <p>○ 종합민원실의 경우 ‘허가민원 법정처리 단축 건수율’ 지표의 경우 2018회계연도 민원접수 건수는 31,261건으로 이 가운데 28,275건이 단축처리돼 성과달성도 90.4%<math>\left[\frac{\text{단축처리건수}}{\text{민원처리건수}} \times 100\right]</math>로 목표치인 92%에 미치지 못하지만, 달성률은 100%로 작성되어 있음</p>	<p>○ 타당한 성과지표 설정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도록 현행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보완 통보하고, 지표 및 목표치 설정시 측정산식에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겠음.</p> <p>○ 성과달성률의 객관성 확보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성과 달성 수치 입력 후 반드시 예산부서에 공문으로 입력 내용 제출하도록 하고, 공문 제출 시 성과보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개선하겠음.</p> <p>○ 직원 이해도 향상 매년 실시하는 예산안 편성 교육 시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한 설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음.</p>	<p>기획예산실</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 사회복지과의 경우  ‘기초수급자 신규 발굴 실적’ 지표의 경우에도 2017회계연도 기초수급자 신규 발굴 실적은 1,064명, 2018회계연도 실적은 2,002명으로 지표 측정산식[(현년도 추진실적/전년도 추진 실적)*100]에 대입할 경우 188%로 목표치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달성율은 105%로 작성됨.</p> <p><b>[개선 및 권고사항]</b></p> <p>○ 성과보고서는 외부에 공시되는 자료인 만큼 당초 성과계획서에 의한 지표 및 목표 임의변경,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가 있어서는 안됨.</p> <p>○ 향후 부서별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사실을 바탕으로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p>		